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997호 2017. 12. 8. (금)
 시화-철쭉
  시조-갈매기
  시목-노티나무

고 시

- 삼척시 고시 제143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----- 2
- 삼척시 고시 제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[변경]승인고시 ----- 5
- 삼척시 고시 제14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----- 9
- 삼척시 고시 제147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----- 12

공 고

- 삼척시 공고 제952호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----- 13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문화공보실 (전화 : 570-3221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17 - 143호

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

삼척시 당저동 산 3-11번지의 개간사업 시행을 농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2. 1.

삼척시장

1. 사업명 :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(개간)

2. 사업시행자

- 주 소 : 삼척시 ***로 ***, ***동 ***호(**동, **아파트)
삼척시 **길 ***-**, ***호(**동, **빌라)

- 성 명 : 정**, 이**

3. 사업내용

- 위 치 : 삼척시 당저동 산3-11
- 지 목 : 임야
- 지 적 : 217㎡
- 승인면적 : 168㎡
- 개간의 용도 : 개전
- 사업기간 : 승인일로부터 2018. 4. 30. 까지

- 부 칙 -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산지전용허가 협의내역 및 조건

1. 협의내역

협의번호	소재지			협의사항			복구비예치(천원)	대체산림자원조성비(원)	수허가자
	읍면리	지번	지적	면적	용도	기간			
협의 17-51호	당저동	산3-11	174㎡	174㎡	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	2017.07.25. ~ 2018.04.30.	면제(660㎡미만)	100%면제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제2호 가목 규정	정**이**
변경 17-177호	당저동	산3-11	174㎡	168㎡(6㎡광수)	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	2017.07.25. ~ 2018.04.30.	면제(660㎡미만)	100%면제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제2호 가목 규정	정**이**

2. 협의조건

○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: 복구공사 착수전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[***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(25만원) 부과**]

○ 산지전용 구역경계 표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 착수로 인한 연접 토지 피해를 방지하고, 편입구역에 대한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(수목등의 고정물에 폭 10cm이상 5m이내 간격으로 표시, 고정물이 없을 경우 깃발 등으로 표시)로 명확히 하여 누구나 분별 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 중에 경계 표시가 망실되거나 퇴색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.

○ 벌채목 중 매각하지 않는 벌채목은 지역의 저소득가구, 농가, 또는 지역내 필요로 하는 곳에 땀감, 톱밥 등으로 무상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

○ **사업구역 경계를 침범하거나 상기의 조건을 미이행하여 허가취소, 작업중지,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, 특히, 산지 경계의 침범 등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됨을 유의**하여 작업인부, 장비기사 등 공사관계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.

○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은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공중·공법 등으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복구공사 착수하여야 함.

○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6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시행

-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고, 이 경우 수직높이 5m(옹벽포함)마다 1m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하며, 최초 소단의 높이는 2m이하로 하고, 옹벽의 침단부 폭은 소단폭에 합산되지 아니함.

-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대책 및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을 위하여 보호공 및 녹화공법 등 자연친화적인 복구대책을 수립 후 사업시행

○ 본 사업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(인접 주택지, 도로)등에 토사유출,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시설(토사유출방지책, 방진망 등) 설치

○ 재해예방시설은 사전에 설치하여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

○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

○ 사업수행 중 본 산지에서 불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.(작업인부들의 라이터, 성냥, 담뱃불, 용접불뚝 등 관리 철저)

○ 본 사업장에 산림관련법에 의한 공무수행 등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입을 원할 경우 통제하여서는 아니되며,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.

○ 사업계획부지내 포함되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·허가(개발행위허가 등)를 받은 후 산지전용하여야 하며, 산지관리법 제16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·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 까지 발생하지 아니함.

○ 금회 허가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, 면적별 내역에 한하며, 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허가 절차 이행. 끝.

삼척시 고시 제 2017-145호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8일

삼척시장

1.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

- 상호 : 한국자산신탁(주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, (역삼동, 카이트타워)

2. 사업개요

- 대지위치 : 강원도 삼척시 교동 99-7번지 외 6필지
- 대지면적 : 26,831.20㎡
- 건축면적 : 8,106.17㎡
- 연 면 적 : 71,870.70㎡
- 사업규모 : 아파트 10동 및 부대시설 8동 / 612세대
- 평형별세대수 : 59㎡형 - 182세대, 72㎡형 - 190세대, 84㎡형 - 240세대
- 층 수 : 지하1층 / 지상 20층
- 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(벽식구조)
- 사업비 : 99,251백만원

3. 사업시행기간 : 2015. 05. 15 ~ 2017. 12. 31

4. 변경사항

- 사업기간 변경 : '15.05.15~'17.11.14' ⇒ '15.05.15~'17.12.31
- 시공사 변경 : 신영건설(주) 및 대림종합건설(주) ⇒ 신영건설(주)
- 아파트명칭 변경 : 지웰라티움 ⇒ 삼척 교동 지웰

5.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

- 산지관리법 제14조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, 같은법 제57조, 같은법 제86조, 같은법 제88조

6. 의제사항 고시 목록

- 도시계획시설(도로,녹지)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신청' 에 따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의제 협의조서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)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

1. 사업시행자의 위치 : 삼척시 교동 산127-1번지 외 25필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삼척시 도시계획시설(중로 2-17, 중로 1-19, 중로 2-4, 소로 3-259, 소로 3-260, 경관녹지)

나. 명 칭 : 교동 신영지웰라티움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가. 도로

구 모				기 능	연 장	기 점	종 점	금 회 시 행		
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거리(m)	폭원(m)	면적(㎡)
중로	2	17	15	집산도로	62	대로3-5 교동100-5도	소로1-36 교동99-3전	62	15	1,052
중로	1	19	20	집산도로	418	대로3-5 교동100-5도	중로2-18 교동219-1도	172	20	3,380
중로	2	4	15	집산도로	543	중로1-18 교동207-4전	중로1-19 교동 산139입	187	15	3,723
소로	3	259	6	국지도로	234	중로2-4 교동산127-1입	소로1-15 교동산135-1입	234	6	999.8
소로	3	260	4	국지도로	147	중로1-19 교동산137입	소로3-259 교동산135-1입	147	4	3,899

나. 경관녹지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금회시행	사 업 량
9	교동택지번녹지	경관녹지	교동 733-2공 일원	1,730	1,730	· 녹생토 A=609㎡, · 테크로드(B=2.0) L=170.0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한국자산신탁(주) 대표 김 규 철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(역삼동,카이트타워)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가. 착 수 일 : 2015. 5. 15.

나. 준공예정일 : 당초 2017. 11. 14. → 변경 2017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

가. 토지조서

지번	지목	지적	신 청 면 적					합 계	소 유 주
			중로 2-17호 (15m도로)	중로 1-19호 (20m도로)	중로 2-4호 (15m도로)	소로 3-259호 (6m도로)	소로 3-260호 (보행자도로)		
100-15	도	326	326	-	-	-	-	326	건분
100-13	잡	199	199	-	-	-	-	199	한국신탁
100-17	잡	1	1	-	-	-	-	1	"
722-5	천	103	103	-	-	-	-	103	"
99-5	전	557	416	141	-	-	-	557	"
99-4	전	154	-	154	-	-	-	154	"
산137-1	임	940	7	933	-	-	-	940	"
산137-3	임	278	-	-	-	278	-	278	"
산137-4	임	1,544	-	-	-	1,544	-	1,544	"
산135-2	임	262	-	262	-	-	-	262	"
산135-6	임	227	-	-	-	227	-	227	"
산135-7	임	1,517	-	-	-	1,517	-	1,517	"
산139-2	임	3,848	-	1,890	1,958	-	-	3,848	"
산139-1	임	890	-	-	890	-	-	890	"
산127-5	임	493	-	-	493	-	-	493	"
산127-1	임	382	-	-	382	-	-	382	"
산127-12	임	126	-	-	-	126	-	126	"
산127-13	임	57	-	-	-	-	57	57	"
산127-9	임	646	-	-	-	646	-	646	"
산127-11	임	359	-	-	-	-	359	359	"
산127-7	임	77	-	-	-	-	77	77	"
산127-8	임	256	-	-	-	-	256	256	"
산127-10	임	9	-	-	-	9	-	9	"
733-9	공	194.3	-	-	-	194.3	-	194.3	삼척시
733-11	공	24.5	-	-	-	24.5	-	24.5	"
733-2	공	3,752.7	-	-	-	-	1,314	1,314	"
합계		17,222.5	1,052	3,380	3,723	999.8	3,899	1,730	14,783.8

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도시계획시설(중로 2-17, 중로 1-19, 중로 2-4, 소로 3-259, 소로 3-260, 경관녹지)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대상이며, 금회 변경 추가되는 경관녹지 내의 테크로드 관련 시설은 귀속대상이 아님.

삼척시 고시 제2017 - 146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제24조,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2. 08.

삼척시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567-6 외4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	
(별지참조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12. 0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	
1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70-12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567-6	20171208	건물신축	20090626	지형지물(두타산)명칭활용	
2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70-40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581-49	20171208	건물신축	20090626	지형지물(두타산)명칭활용	
3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997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29-36	20171208	건물신축	20090626	행정구역(미로,노곡,근덕)연결 구간시종점지역명칭활용(미로,근덕)	
4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83-11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실길 131	20171208	건물신축	20090626	지역명(마을명)사용	
5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-1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60	20171208	건물신축	20170901	지명(수릉)활용	
6		이	하	여	백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11							
12							

도로명주소 부여 내역

구분	순번	종전주소		주소일	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		총계	도로명주소 5건					
부여	1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70-12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567-6	2017.12.08	건물신축	20090626	지형지물(두타산)명칭활용	
부여	2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70-40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581-49	2017.12.08	건물신축	20090626	지형지물(두타산)명칭활용	
부여	3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고기리 997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29-36	2017.12.08	건물신축	20090626	행정구역(미로, 노곡, 근덕)연결 구간시정선지역명칭활용(미 로, 근덕)	
부여	4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83-11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실길 131	2017.12.08	건물신축	20090626	지역명(마을명)사용	
부여	5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855-1	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동길 80	2017.12.08	건물신축	20170901	지역명(수동)활용	

삼척시 고시 제2017-147호

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

삼척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2. 07.
삼척시장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구분	예산액	기정액	증 △ 감	증감률
합 계		605,171,407	599,620,449	5,550,958	0.9%
일 반 회 계		560,905,545	555,354,587	5,550,958	1.0%
특 별 회 계		44,265,862	44,265,862	-	-
상 수 도 사 업		20,120,649	20,120,649	-	-
하 수 도 사 업		4,989,858	4,989,858	-	-
주 택 사 업		58,276	58,276	-	-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	10,536,053	10,536,053	-	-
천 연 가 스 생 산 기 지		1,139,755	1,139,755	-	-
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		1,789,136	1,789,136	-	-
자 활 기 금		1,400,185	1,400,185	-	-
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		708,239	708,239	-	-
주 차 장 사 업		956,916	956,916	-	-
임 대 아 파 트 관 리 운 영		2,566,795	2,566,795	-	-

삼척시공고 제[2017-952호] 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(별지 제24호서시)

분할조서 의결 공고

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공고 기간 : 2017.12.07. ~ 2017.12.21.
- 2. 공고 내용 :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

토지 표시				공유토지분할 신청인			동리인 외 인			
시·군	읍·면	동·리	지 번	지목	면적(m ²)	분할 후 필지 수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
삼척시	도계읍	도계리	357-13	대	205	2	김*매 외 1	3*.1*.2*	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57-***	김 * 매 외 1인

삼 척 시 보 2017년 12월 07일